

의안번호	2202038
의 퇴 인	서미화 의원
회 답 일	2024. 8. 1.
추 계 번호	24C206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광역 시·도에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정하여 관련 행사를 수행하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0억 1,800만원(연평균 2억 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시·도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 설치·운영(안 제59조의20)	104	104	104	104	104	518	104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안 제59조의22)	100	100	100	100	100	500	100
추가재정소요 합계	204	204	204	204	204	1,018	20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9조의20(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간의 협력을 위한 협의회(“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59조의22(장애인학대예방의 날)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장애인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장애인학대예방주간으로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9조의20(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	○	○ 서울특별시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2	안 제59조의22(장애인학대예방의 날)	○	○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10조의2와 안 제59조의4는 재정을 수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

○ (안 제10조의2) 개정안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사항은 이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조치는 재정을 수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가장 최근 수립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장애학대 예방 및 권리옹호 강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안 제59조의4) 동 조항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동 조치는 재정을 수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 설치·운영(안 제59조의20)

- 개정안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회의수당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추계서는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시 위촉위원에 대한 회의수당만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서울특별시의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위원 수 및 회의수당 단가, 회의 횟수 등을 적용하여 추계
 - (위촉위원 수) 2024년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위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장애인학대현황」 자료상 학대의심사례 수의 지역 간 비율에 따라 위촉위원 수가 달라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지역별 최대 위촉위원 수는 28명이며 추계기간 위촉위원 수는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2024년 현재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총 26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23인이 위촉위원
 - 위 가정에 따라 지역별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 위촉위원 수를 추정할 경우 경기도는 64명이 산출되나,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의 최대 위원 수는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한 30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 최대 위촉직위원 수를 28명으로 가정

[표 2]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 위촉위원 수 추정

(단위: 건, %, 명)

구 분	학대의심사례	비율(A)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위원 수(B)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 위촉위원 수 추정 $\min(28, B \times A)$
서울	204	100.0	23	23
부산	181	88.7	—	20
대구	154	75.5	—	17
인천	117	57.4	—	13
광주	70	34.3	—	8
대전	99	48.5	—	11
울산	151	74.0	—	17

(단위: 건, %, 명)

구 분	학대의심사례	비율(A)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위원 수(B)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 위촉위원 수 추정 $\min(28, B \times A)$
세종	62	30.4	—	7
경기	569	278.9	—	28
강원	125	61.3	—	14
충북	188	92.2	—	21
충남	136	66.7	—	15
전북	92	45.1	—	10
전남	123	60.3	—	14
경북	144	70.6	—	16
경남	144	70.6	—	16
제주	82	40.2	—	9

주: 서울특별시 외에 다른 지역에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본 추계서에서는 서울시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함

자료: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현황 자료 및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장애인학대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회의수당 단가)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서상의 위촉위원 1인당 회의수당 단가인 20만원을 적용
- (회의 횟수) 서울특별시의 장애인복지위원회는 1년에 1~2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므로(분과회의 제외), 이를 참고하여 1년에 2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시·도에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5억 1,800만원(연평균 1억 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시·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전국 위촉위원 수(A)	259	259	259	259	259	—	—
회의수당 단가(B)	0.2	0.2	0.2	0.2	0.2	—	—
회의 횟수(C)	2	2	2	2	2	—	—
추가재정소요(A×B×C)	104	104	104	104	104	518	10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안 제59조의22)

-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정하는 경우, 국가 등의 행사 개최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보건복지부는 매년 아동학대예방의날 행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행사비 단가를 참고하여 추계
 - 매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예방의날로,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에 홍보위탁사업을 통해 아동학대예방의날 행사를 수행하고 있음
 - 아동권리보장원에서 2023년 아동학대예방의날 행사에 소요한 비용은 약 8,300만원이며, 2024년에는 약 9,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본 추계서는 아동학대예방의날 행사비를 참고하여, 매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에 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홍보·행사를 수행하는 경우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추계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 추계결과,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정하여 관련 행사를 수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5억원(연평균 1억원)으로 추계됨

[표 4]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안 제59조의22)	100	100	100	100	100	500	1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assembly.go.kr